

「구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및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책임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축물관리자의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정함
(안 제3조, 제5조)

- 보도 : 전체구간
-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대지경계로부터 도로 중앙부분까지

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를 규정함. (안 제4조)

- 소유자 거주시와 비거주시로 나누어 제설책임 순위를 정함

다. 제설 및 제빙작업의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작업기준을 정하되, 건축물 관리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제설·제빙작업이 가능하게 된 때부터 기준시간을 적용하도록 하여 불가피한 책임 불이행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안 제6조)

- 주간에 내린 눈 :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 야간에 내린 눈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라. 제설·제빙작업은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눈이나 얼음을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도록 하고,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리고,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도록 함. (안 제7조)

마.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안 제8조)

-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겨울철 자연 재난대책기간동안 비치·관리하도록 함.

4. 참고사항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 경상북도 민방위재난관리과-8270(2005.11.01)호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표준안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및 경상북도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표준 조례안 통보에 따른 것으로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대설시 자기집, 자기상가 앞의 눈을 치우는 성숙된 시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것임
- 다만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별칙 근거 규정이 없어 시민의 자율적인 이행과 성숙한 시민의식만이 조례 제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지며, 사 후 건축물 관리자가 제설, 제빙 작업을 이행하지 못하여 사고가 날 경우 과실 책임에 대한 사법적 다툼

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짐. 따라서 앞으로 결빙 구간에 대한 통행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제설 책임에 대한 주민 홍보와 행정지도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짐.